

# 경상북도 발전소 등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 보고서

1. 소관기관 및 부서: 경상북도 동해안전략산업국

### 2.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4월 12일, 김진엽 의원 외 13명

나. 회부일자: 2024년 4월 15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 2024년 4월 23일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의결

### 3.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설명자: 김진엽 의원

나.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개정 2024.2.20. 시행 2024.4.1.)에 따라,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시·군에 조례로 정하는 비율로

균등 배분하도록 함.

#### 다. 주요내용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시·군에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조정 교부금 배분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 4. 검토보고의 요지(수석전문위원 장영두)

#### 가. 조례 개정의 필요성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일부개정(2024.2.20.)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 지원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조정교부금을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중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에 포함되는 포항·봉화에 균등 배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위 법이 2024.4.1.일 시행되는 시기와 맞추어 개정코자 하는 것임.

### <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 >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 1> 제2조제1항제9호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란 원자력시설에서 방사선비상 또는 방사능재난이 발생할 경우 주민 보호 등을 위하여 비상대책을 집중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어 제20조의2에 따라 설정된 구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역을 말한다.

- 예방적보호조치구역: 원자력시설에서 방사선비상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주민을 소개(疏開)하는 등 예방적으로 주민보호 조치를 실시하기 위하여 정하는 구역
-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 원자력시설에서 방사선비상 또는 방사능재난이 발생할 경우 방사능영향평가 또는 환경감시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구호와 대피 등 주민에 대한 긴급보호 조치를 위하여 정하는 구역

#### 2> 제20조의2(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설정 등)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시설별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설정의 기초가 되는 지역(이하 “기초지역”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자력시설이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 예방적보호조치구역: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이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3킬로미터 이상 5킬로미터 이하
  -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이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20킬로미터 이상 30킬로미터 이하

## 나. 주요내용

- 안 제5조(세출) 제1항과 제1호에서는 각각 자구를 수정하여 조문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였으며
- 같은 조 제2호에서는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배분비율을 반영하여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에 포함되는 포항, 봉화에 대해 ‘24년 100분의 5부터 ’27년 이후는 100분의 20까지 순차적으로 자원시설세를 배분하는 근거를 규정함.
- 같은 조 제3호에서는 지역자원시설세 중 ‘예방적보호조치구역’

이 있는 경주·울진은 현행대로 65%를, 신규 배분 대상인 포항·봉화에는 위와 같이 20%를 배분하고 그 나머지인 15%를 도 자체사업 재원으로 조정함을 규정함

- (현행)도 : 경주·울진 = 35% : 65%
- (개정)도 : 경주·울진 : 포항·봉화 = 15% : 65% : 20%

####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방사선비상계획 구역 중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이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20킬로미터 이상 30킬로미터 이하에 해당하여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으로 지정된 포항·봉화 일부 지역에 대하여 같은 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배분 비율을 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관련 법이 ‘24년 4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시의성있게 대응하는 것으로서 법적합성과 시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됨.
- 2024년 현재 지역자원시설세는 총 880억원 중 도가 35%(308억 원), 경주·울진이 65%(572억원)로 배분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음.
-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경주·울진은 배분비율이 현행대로 65%로, 도의 배분비율은 현행 35%에서 15%로 감소하게 됨.

- 배분 비율과 관련, 원전시설을 보유한 부산·울산·전남의 경우도 우리도와 동일하게 광역 15%, 기존 시·군 65%, 추가 시·군 20%을 계획하고 있음. 다만 우리도가 '24년부터 '27년까지 순차적으로 20%까지 상향하는 안을 계획하는 것과 달리 부산의 경우는 '25년부터 20%를 배분하는 안을 계획하는 것으로 확인됨.
- 한편, 우리도에서는 '23년 행정안전부에 원전 소재지 지역의 지역자원시설세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국가재정으로 비상계획구역을 지원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으나 행정안전부의 절충안이 받아들여져 「지방재정법」이 현재대로 개정됨.
- 본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지역자원시설세(각각 88억원 예상)를 배분받는 해당 시·군에서는 원전에 대한 안전대책 수립 및 지역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나, 한편으로 '24년 5%부터 매년 순차적으로 5%씩 증액하여 최종 '27년 이후부터 최종 20%를 배분받는 것에 대해서는 민원 발생이 소지가 있을 수 있어 이에 대한 경북도의 입장을 해당 시·군에 충분히 전달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시·군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대책 마련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6. 토론 요지: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